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95163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현, 나덕중, 이예주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창권, 김영기, 강승욱, 정천교
변 론 종 결	2025. 12. 9.
판 결 선 고	2026. 1.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계열회사로서 음악·음반제작업,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뮤직비디오의 제작 등

1) 원고는 2023. 5. 10.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 소속의 여성 아이돌그룹인 'E'의 곡인 'F' 등에 관한 뮤직비디오 제작을 총 2,029,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지식재산권)
2. 본 계약 이행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저작권 및 2차적저작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작성권 포함)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위탁자는 산출물을 수정, 편집하여 수탁자의 성명 표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탁자는 산출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비밀유지 및 공개금지)

1. 비밀정보. 수탁자는 본 계약 체결 사실 및 본 계약 내용, 본건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위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어떠한 경로로든 알게 된 위탁자 및 위탁자의 관련자(위탁자의 계열회사, 위탁자 및 위탁자의 계열회사의 임직원, 위탁자 및 위탁자의 계열회사 소속 아티스트 및 이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제3자 포함, 이하 같음)에 관한 정보, 자료, 본 계약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 풍문, 언급 기타 여하한 형태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비밀정보를 포함한 정보 일체의 유포 금지. 수탁자는 위탁자 및 위탁자의 관련자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 한 본건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위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어떠한 경로로든 알게 된 정보 및 본 계약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이든 제3자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이든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온라인 매체(SNS, 인터넷 상의 게시글, 댓글 작성, 스마트폰 메신저 등 모든 방식을 의미함, 이하 동일) 및 오프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료. 수탁자는 본건 용역 산출물 및 본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를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온·오프라인 매체에 게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4. 유포 금지. 수탁자는 내용의 사실 여하를 떠나 위탁자와 위탁자의 관련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여지가 있는 언행을 하지 않고, 특히 허위 사실 등 루머를 유포하지 않는다.
5. 홍보 금지. 수탁자는 본건 용역 수행 사실 및 위탁자와 위탁자의 관련자에 대한 회사명/성명, 초상을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의 이력이나 성과 홍보용 등으로 온·오프라인 매체에 게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프로필 작성, 이행실적증명을 위한 용도로 게시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1. 수탁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수탁자는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다.

3. 수탁자가 제9조(지식재산권) 또는 제10조(비밀유지 및 공개금지)를 위반한 경우, 본 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주요 계약 사항'의 '위약벌'에 따른 금액을 위탁자가 요청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탁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5. 계약서의 변경. 본 계약서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원고는 2023. 5. 26. G(G, 이하 'G'이라 한다)의 대행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와 "G 측이 'F'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지원하고, 'F' 음원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F' 뮤직비디오(이하 '이 사건 뮤직비디오'라고 한다)의 제작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2023. 7. 21.경 이 사건 뮤직비디오를 대중들에게 공개하였다.

다. 이 사건 영상의 게재 및 중단

피고 B은 2024. 8. 31. 이 사건 뮤직비디오의 결말 부분에 약 10초 분량의 영상을 추가한 감독판(Director's Cut)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피고 B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4. 9. 2.경 위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였다.

라. 피고 C의 게시물 게재

피고 C은 2024. 9. 2.부터 2024. 9. 9.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일자	게시물 내용
2024. 9. 2.	경영진이 바뀐 A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A 측의 삭제 요구에 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해, 그 동안 B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E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B과 I 유튜브 채널은 우리가 작업한 포트폴리오 아카이빙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 1원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들과 채널은 팬들을 위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자발적 취지로 제작되었으며 B에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뀐 A의 요구에 따라 모든 영상은 삭제되고 공개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B과 A의 협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E 아이들과 앞으로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프로젝트들로 있는데 지킬 수 없어 안타깝네요. 몇 달간 밤새가며 작업에 매달린 스탭들에게도, 무엇보다 기렸을 팬들에게도 미안합니다.
2024. 9. 3.	머라는 겁니까. 대체 오늘 유선으로 디렉터스컷 업로드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는 팬들을 위해 디렉터스컷을 B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A 경영진은 B이 디렉터스컷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입장문에 상관도 없는 제3자를 끌어들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까? 이는 광고업계의 불문율을 무시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의를 저버리를 행동입니다. A에 귀속된 저작권과 초상권을 가진 영상은 공식 계정에만 공개할 수 있고, 제3자 채널에는 존재할 수 없다며 삭제 요청을 해온 것은 A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B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약벌로 용역대금 2배를 청구하겠다며 협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겁니까? 혹시 삭제 이후에야 I 채널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감독이 자기 작업물을 스스로 불태워버립니까? 제가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I 채널은 제가 연출한 'J'라는 작품의 연장선이었고, A에 굳이 자청하여 아무 보수 없이 팬들을 위해 만든 채널과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무런 동기도 없이 다 삭제해 버렸다는 겁니까? B은 뮤직비디오를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작품의 완성도와 팬들을 위해 무보수로 작업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현 A의-기존 협의를 뒤집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부당한 요구에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당시의 합의 사항도 모르면서, 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B을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드는 겁니까? 제가 탄원서를 써서 이러는 건지, D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거절해서 인지, E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언론 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맙시다. 이래도 또 하겠지.
2024. 9. 9.	좋은 아침입니다. K 대표님. L 부대표님. 제가 녹취와 메일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A 입장문에서 저는 허위사실 유포자인데, 왜 뒤로는 연락해서 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겁니까. A 직원을 보호는 못할망정 누명까지 씌우고,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 오신 건가요? 저희가 갑질 당한 지 좀 오래되어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업계에서 일하는 저희에게 이 정도인데 엔터 업계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일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기존 합의한 대로 I 채널의 소유권은 B에 있습니다. 하지만 B에게 채널에 대한 권리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I 채널이 작품의 연장선으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아무 대가 없이 팬들을 위하고자 만든 채널인데, 분쟁 속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될까 불안해하는 팬들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채널을 팬클럽에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소유권을 A에 이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절대 보존 조건입니다. 채널의 그 무엇도 삭제, 수정, 추가하지 않는 절대 보존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요구는 하나입니다. 사과하세요. - 협력사를 존중하지 않은 과격한 시정 요구에 대한 사과 -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저작권 침해 운운한 것에 대한 사과 - 입장문을 통한 B 및 C 대표 비난에 대한 사과 이를 포함한 사과문을 A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늘까지 게시하신다면, B은 I 채널을 A로 이전할 것입니다. A는 사과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A가 잘못을 인정하고, 혼란스러울 팬들을 위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쓸데없는 말 덧붙이지 마시고 딱 사과만 해주세요. 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약 사과가 없으시다면, 저는 I 채널을 팬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기존 합의에 대한 증거를 들고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니까 또 하셨던데 더러운 언론 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이래도 또 하겠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12, 21, 47, 4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위약벌 청구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 제2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 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산출물 등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이러한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을 피고 B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용역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4,059,600,000원을 원고에게 위약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위약금의 일부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1)]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영상을 무단으로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영상에 관한 저작권(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 청구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나) 피고 C은 2024. 9. 2.부터 2024. 9. 9.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를 모욕하였는바,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2023. 7. 3.경 원고와 이 사건 영상을 피고 B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에 관한 구두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영상을 위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위반에 관한 원고의 위약벌 내지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이 작성한 이 사건 각 게시물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표현으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작성 경위, 해당 표현이 사용된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법행위를 인정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위약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영상 게재에 관한 구두동의 여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은 2023. 7. 3.경 원고로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영상을 피고 B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에 관한 구두동의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23. 7. 3.경 이 사건 뮤직비디오 제작과 관련하여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M, 피고 C, G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N, O 유한회사(이하 'O'라고 한다)의 P 매니저, G의 광고 대행사인 H MAL[2]의 Q 국장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였다.

2)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의에 참석하였던 M은 '회의에서 리뷰한 F 뮤직비디오의 1차 편집본은 이 사건 영상에 해당하는 결말이 다른 버전[3]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G의 N 부사장은 위 결말의 예술적 가치면에서 긍정적이었으나, 광고용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G 본사의 내부 검토를 거쳐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피고 C은 G의 광고물로 활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식 뮤직비디오의 경우 위와 같은 결말이 삭제된 버전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해당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피고 B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N 부사장은 이 사건 영상의 공개 결정 여부는 G의 로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G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의사결정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M은 공식 뮤직비디오에서는 해당 장면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피고 B의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으로 업로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을 제1호증의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등 참조).

3) O의 P은 '2023. 7. 3.자 회의에서 리뷰한 1차 편집본은 이 사건 영상에 해당하

2) H는 전세계적으로 광고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여러 광고주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H에서 G의 광고 서비스를 전담하는 팀은 MAL(Media Arts Lab)인바, 편의상 이를 H MAL이라 칭한다.
3) 이 사건 영상은 여자주인공이 남자친구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가서 절벽 아래로 떨어트리는 장면이 포함된 버전이고, 최초 공개된 이 사건 뮤직비디오에는 위와 같은 결말이 포함되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는 결말이 다른 버전이었는데, 당시 G의 N 부사장은 위 결말에 대해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광고로 적절한지는 G 본사의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 C은 결말 장면이 삭제된 버전으로 영상이 공개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광고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이 사건 영상과 같이 결말 장면을 포함한 전체 영상을 공개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고, M 대표도 피고 C의 입장에 수긍하며 광고 캠페인 이후 이 사건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호증의 2).

4) G의 광고 대행사인 H MAL의 Q은 '2023. 7. 3.자 회의에서 처음 검토되었던 편집본은 이 사건 영상에 해당하는 결말이 포함된 버전이었는데, N 부사장은 위 결말 장면을 개인적으로는 좋게 평가했으나 광고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관련하여 G 본사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광고 캠페인의 공식 뮤직비디오에서는 해당 장면을 삭제한 것으로 공개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나 광고 캠페인 종료 후에는 해당 결말이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이 공개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원고 회사의 M 대표이사도 광고 캠페인 종료 후에는 해당 결말이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피고 B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호증의 3).

5) 위와 같이 2023. 7. 3.자 회의에 참석하였던 M, P, Q은 모두 피고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던 M이 이 사건 뮤직비디오에 관한 광고 캠페인이 종료된 후 피고 B이 이 사건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중 위와 같은 구두동의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는 사람은 없다[4]. 특히 P, Q은 이 사건 뮤직비디오 제작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광고 업무에 관한 G 측 담당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6) 원고 회사의 임원이자 콘텐츠기획 담당자였던 R은 2024. 9. 1. 이 사건 영상의 게재 경위에 관하여 당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L에게 '이 사건 영상은 G의 요청에 따라 수정되기 전 버전으로, 피고 B의 채널로 업로드하기로 사전 구두 협의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갑 제5호증), 피고 C 또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받고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한 뒤 이 사건 각 게시물 등을 통해 '기존에 원고와 이 사건 영상을 피고 B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였다. 피고 B이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사과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갑 제9, 12호증).

나. 위약벌 지급 의무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구두동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13조 제3항에 따른 위약벌 4,059,600,000원(용역대금 2,029,800,000원의 2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1 내지 3항[5]은 피고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4) 당시 회의 참석자들 중 N의 진술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게시물 게시 후 N에게 재차 확인해 본 결과 N 또한 위와 같은 구두동의의 존재를 인정하였지만 G의 부사장이라는 지위로 인하여 사실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5)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1 내지 3항뿐만 아니라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5항은 "수탁자는 본건 용역 수행 사실 및 위탁자와 위탁자의 관련자에 대한 회사명/성명, 초상을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의 이력이나 성과 홍보용 등으로 온·오프라인 매체에 게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프로필 작성, 이행실적증명을 위한 용도로 게시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산출물 자체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산출물인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7항은 피고 B이 본조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 B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 제13조 제3항은 피고 B이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주요 계약 사항'의 위약벌에 따른 금액을 원고가 요청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계약 사항'란에는 위약벌을 용역대금의 2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14조 제5항은 계약의 변경은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 또는 정하였으나 변경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새롭게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5항은 피고 B이 용역의 수행 사실 등을 피고 B의 프로필 작성, 이행실적증명을 위한 용도로 게시 또는 공개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3항 등의 '사전 서면동의'와 다르게 정하고 있다.

3) 피고 B이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이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서면동의와 관련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에서 그 동의에 있어 서면의 방식까지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영상 등과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물의 이용에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의의 상대방이 동의권자의 의사를 문서로서 명확히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의권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동의하게 하고 동의의 상대방 역시 명확한 서면에 기초하여서만 용역 산출물을 공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14조 제5항 및 제2조 제1항은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도 서면합의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영상의 이용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거나 원고와 구두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1 내지 3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13조 제3항에 따른 위약벌로 원고가 명시적 일부로 구하는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약벌 지급을 요청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0. 14.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상을 피고 B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는 것에 관하여 구두동의를 얻었고, 위와 같은 구두동의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1)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상 명예훼손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이는 결국 법인의 명예, 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용훼손에 있어 '신용'이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626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등 참조).

3) 한편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89019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및 위와 같이 사전 서면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해 "원고의 바뀐 경영진의 정책변화로 이 사건 영상의 삭제 요구를 받았다.", "피고 C이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M을 위한 탄원서를 쓴 것이나 원고의 모기업인 D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거절한 것이 원고의 이 사건 영상 삭제의 원인이다.", "원고가 'E 지우기'에 나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4, 7.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의 표현들이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로부터의 구두동의에 따라 2024. 8. 31. 이 사건 영상을 피고 B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4. 9. 2.경 이 사건 영상을 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 C은 대중들에게 이러한 이 사건 영상의 삭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2024. 9. 2.자 게시물을 게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하였다.

2) 피고 C은 2024. 9. 2.자 게시물에서 "경영진이 바뀐 A(원고)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갑 제7호증),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교체됨에 따라 피고 B이 기존과 같이 원고로부터의 구두동의 방식으로 E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에 업로드하였던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2024. 9. 3. 피고 C의 위 2024. 9. 2.자 게시물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와 광고주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엑스(X, 구 트위터)에 게시하였고(갑 제8호증), 이에 피고 C은 2024. 9. 3.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이 사건 영상의 업로드에 대하여 기존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했다.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원고, 피고 B, G)는 팬들을 위해 이 사건 영상을 피고 B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4) 그리고 피고 C은 위 2024. 9. 3.자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제가 탄원서를 써서 이러는 건지, D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거절해서 인지, E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모르겠지만."라고 기재하였는데(갑 제9호증), 이는 원고가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 C이 자신의 생각을 추측의 형태로 이야기한 것이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특정한 사실의 존재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5) 나아가 피고 C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할 당시 원고의 경영진 변경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의 경영 방침 변화, 원고와 E와의 갈등 등에 관한 여러 언론기사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블로그 등이 이미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었는바, 이에 관한 피고 C의 게시물 내용은 세간에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을 제4, 7, 9, 12호증).

다. 모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해 "원고의 임직원들이 '거짓말'한다.", "원고가 피고를 '뒤로는 연락해서 회유하려고 안감힘'을 쓴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갑질'했다.", "원고가 피고들을 '협박'했다.", "원고가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 "원고가 '더러운 언론 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한다.", "원고가 '과격한 시정 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잘못'을 하였고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의 기재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모욕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C의 2024. 9. 3.자 및 2024. 9. 9.자 게시물 중 원고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표현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순번	원고 주장	피고 C의 게시물 내용
1	원고의 임직원들이 '거짓말'한다.	오늘 유선으로 디렉터스컷(이 사건 영상) 업로드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는 팬들을 위해 디렉터스컷을 B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A 경영진은 B이 디렉터스컷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거짓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2024. 9. 3.자 게시물). K 대표님. L 부대표님. 제가 녹취와 메일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2024. 9. 9.자 게시물).
2	원고가 피고를 '뒤로는 연락해서 회유하려고 안감힘'을 쓴다.	그리고 A 입장문에서 저는 허위사실 유포자인데, 왜 뒤로는 연락해서 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겁니까(2024. 9. 9.자 게시물).
3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갑질'했다.	저희가 갑질 당한지 좀 오래되어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2024. 9. 9.자 게시물).
4	원고가 피고들을 '협박'했다.	일요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피고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약벌로 용역대금 2배를 청구하겠다며 협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겁니까?(2024. 9. 3.자 게시물).
5	원고가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현 A의-기존 협의를 뒤집는-부당한 요구에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2024. 9. 3.자 게시물).
6	원고가 '더러운 언론 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한다.	더러운 언론 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맙시다(2024. 9. 3.자 게시물). 그리고 하지 말라니까 또 하셨던데 더러운 언론 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마세요(2024. 9. 9.자 게시물).
7	원고가 '과격한 시정 요구'를 하였다.	협력사를 존중하지 않은 과격한 시정 요구에 대한 사과(2024. 9. 9.자 게시물).
8	원고는 '잘못'을 하였고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 요구는 하나입니다. 사과하세요. A는 사과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A가 잘못을 인정하고, 혼란스러울 팬들을 위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니까 비겁하게 쓸데없는 말 덧붙이지 마시고 딱 사과만 해주세요(2024. 9. 9.자 게시물).

나) 피고 C은 2024. 9. 2.경 이 사건 영상의 삭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의 인스타그램에 위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원고는 2024. 9. 3. 피고 C의 위 게시물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와 광고주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하였을 뿐 다른 영상의 삭제 등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24. 9. 3. 이 사건 영상의 게재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다른 E 영상에 관한 삭제 요구를 하였는지 등을 설명하고 원고 주장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 2024. 9. 3.자 및 2024. 9. 9.자 각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C은, 위 표 순번 1, 6 기재 게시물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와 광고주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및 G과의 이 사건 영상 게재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밝히며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 주장", "거짓말", "더러운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 위 표 순번 5 기재 게시물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영상 게재에 대한 구두동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것을 "(기존 협의를 뒤집는) 부당한 요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표 순번 2, 3 기재 게시물은 원고가 2024. 9. 3. 공개 입장문을 통해 "피고 C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피고들에게 연락하여 회유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리고 위 표 순번 4, 7, 8 기재 게시물은 이 사건 영상 게재에 대한 구두동의가 존재함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하겠다."고 주장한 것 등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원고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라) 위와 같은 피고 C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경위, 표현의 전체적인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과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일부 표현들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표현들만으로 객관적으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C이 이 사건 영상 게재의 합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원고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하여 원고의 명예 내지 신용을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0

판사 정요진

판사 황진영